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동의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991
----------	------

2017. 8. 31
도시계획관리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. 8. 14.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7년 8월 16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(2017.8.31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정유승 주택건축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서울시에서는 택지의 개발과 공급, 주택의 건설·개량·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한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운영하고 있음.
- 이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지원하고자 출자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1) 출자 개요

- 대상기관 : 서울주택도시공사
- 관련법규 : 지방공기업법,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2) 주요사업

-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
 - 민선6기 6만호 공급 달성 및 주택재고의 10%까지 지속 공급
 - 건설 및 매입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
- 민관협력을 통한 공공성을 갖춘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
 - 민관협력형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을 통한 저렴주택 확보
 -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 공급을 통한 공동체주거모델 제시 등

3) 출자의 필요성

-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민관협력 민간임대주택 공급 사업은 서울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많은 자금이 수반되는 사업이며, 실제 주택의 건설 및 공급은 실행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.
- 따라서, 서울시 서민주거안정정책의 실행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민관협력 임대주택 발굴 등 공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출자금으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.

3. 검토보고의 요지 (조정래 수석전문위원)

- 이 동의안은 서울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사업의 추진 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016년 8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.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하며, 출자·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는 것으로 출자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님.
 - 출자금액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재정규모 및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시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.
 - 서울주택도시공사 납입자본금은 공사설립 후 현재까지 총 5조 5,122억원이며, 이 중 현금출자는 3조 7,513억원, 현물출자는 1조 7,609억원임(붙임 1 참조).

<최근 5년간 출자 현황>

(단위 : 억원)

구 분	2013	2014	2015	2016	2017	합 계
현금출자	4,783	3,003	2,243	1,820	1,660	13,509
현물출자	178	21	159	0	0	358
합 계	4,961	3,024	2,402	1,820	1,660	13,867

- 2018회계년도 출자금은 기존주택 매입임대,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및 공동체주택,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출자금 총액은 2,309억 7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출자금 1,660억 3백만원 대비 39.1% 증가하였음(붙임 2 참조).
- 사업별 국비지원금의 예상 총액은 1,652억 3천6백만원 규모로 전년도 2002억 3천만원 대비 17.5% 감소하였음. 국비 및 서울시 출자금의 비율은 약 3:7 수준임.

사업명	2017년	2018년	증감액	증감률
계	166,003	230,972	64,969	39.1%
기존주택 매입임대-다가구 주택	82,500	109,250	26,750	32.4%
고시원 및 모텔 활용 저렴주택 공급 (리모델링형 사회주택 매입형)	9,000	3,000	△6,000	△66.7%
토지임대부 사회주택	8,468	18,797	10,329	122.0%
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	-	2,000	2,000	-
공공원룸주택 매입·건설 공급	26,720	68,000	41,280	154.5%
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(민선5기)	30,519	29,925	△594	△1.9%
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(민선6기)	8,796	-	△8,796	△100.0%

※ 2018연도 출자금액은 예산과로 제출된 세출요구액임.

-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989년 2월 1일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로 최초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복지사업을 전담해오고 있으며, 현재까지 서울시 전체 주택 재고¹⁾의 5% 수준인 약 18만 4천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, 9만 1천여호의 분양주택을 공급²⁾하는 등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음.

1) 서울시 전체주택호수 3,633천호(2015년 기준)

2) 2016년말 기준

- 안정적이고 일관된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복지정책의 집행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2018회계연도 출자동 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 출자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추 후 예산안 심의 시 검토되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동의(출석위원 전원찬성)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

의안 번호	199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년 8월 14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에서는 택지의 개발과 공급, 주택의 건설·개량·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한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운영하고 있음
- 나. 이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지원하고자 출자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출자 개요

- 대상기관 : 서울주택도시공사
- 관련법령
 - 법령 : 지방공기업법
 - 조례 :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나. 주요사업

-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
 - 민선6기 6만호 공급 달성 및 주택재고의 10%까지 지속 공급
 - 건설 및 매입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

- 민관협력을 통한 공공성을 갖춘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
 - 민관협력형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을 통한 저렴주택 확보
 -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 공급을 통한 공동체주거모델 제시 등

다. 출자의 필요성

-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민관협력 민간임대주택 공급 사업은 서울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많은 자금이 수반되는 사업이며, 실제 주택의 건설 및 공급은 실행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
- 따라서, 서울시 서민주거안정정책의 실행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민관협력 임대주택 발굴 등 공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출자금으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18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주택정책과 주택정책팀 박은영(☎2133 - 7044)